

# 1.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524호 1998. 2. 24

## 주요 골자

- 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양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법 제33조의2)
- 나. 지금까지는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1998년 1월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 다.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5)
- 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 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 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6 및 제40의7).
- 마.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를 이

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개선시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 (법 제40조의8·제40조의9·제113조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 개 정 이 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호의2제1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를 “양도한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5 내지 제40

조의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제2항 본문중 “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내에”를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 내에 당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인 양도·양수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양수에 있어서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양도대상법인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일 것
2. 양도의 방법 :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1999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은 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자 :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중 보유하게 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당해 양도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른다.

나.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경영합리화 가능성 등 : 다음 각목의 확인을 받은 것일 것

가. 회계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대상법인의 재무구조 및 당해 양도·양수로 인한 양도대상법인의 경영합리화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일 것.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에 당해 양도·양수와 관련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그 타당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상법인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 주주가 보증(1998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증을 제외한다)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 또는 변제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대상법인의 부채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항에서 “부채감소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부채감소액은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93조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의 방법,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방법, 회계법인의 확인, 기

업구조조정계획의 제출 및 확인,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검토) ①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채무(이하 “금융기관채무”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채무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채무의 양도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

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받은 양도소득 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산정한 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채무비율이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채무비율 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 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 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 부채비율의 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 세법특례) ①제40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융·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융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건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건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 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

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 증여내용 및 그 사유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은행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법인이 자산(은행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액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8(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

금산입 등)①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당해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교환준칙의 용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9(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액 등의 검토)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 양수 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재무구조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재무구조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증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양도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기업재무구조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 양도대금을 기업재무구조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될 때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기업재무구조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재무구조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세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기업재무구조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중 “제6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63조”로 한다.

제78조중 “제63조”를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이 양도하는 토지와 제63조”로 한다.

제1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8.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9. 제4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무

8. 제4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무

제123조제1항중 “제45조”를 “제40의3·제45조”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별 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8·제113조제1항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폐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액의 양도·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양수

주택회보